

##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1. 26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1. 2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01. 12. 13)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윤형석)

가. 제안이유

-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와 규모의 확대 등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투자심사의 근거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정된 투자심사의 시기, 대상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타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투자심사 대상을 정함(안 제2조제1항)
- 현행 훈령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촉의 규정을 두어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 투자심사 주기를 다음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의 일정을 상·하반기의 정기심사제로 하여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5조)
- 투자심사 의뢰받은 사업 중 계획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적정·조건부 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났더라도 일정규모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7조)
- 투자심사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존재원의 신청 및 예산편성 등의 재정관련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함(안 제9조)

###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제4조6항 수당, 여비지급을 민간전문위원에게 지급하는데 당연직공무원도 지급하는지?	○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당, 여비지급을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해야 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 네.
○ 7조1호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너무 과하지 않은지?	○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하는 겁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별 침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538호
의결년월일	2001. 12. 24 (제92회)

제출년월일 : 2001. 12. 22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투자심사 대상의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 중 전액 국가재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15인 중 민간전

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자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사결과의 부적정란에 타당성이 결한 사업이 해당되는바 이는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삭제
- 사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 사후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은 시장이 직접 하지 않고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한다고 함

2. 주요골자

- 투자심사대상심사기준적용배제대상사업 명시(안 제2조제1항4호)
- 민간인 전문가를 1/2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위원 중 공무원이나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안 제4조제6항)
- 투자심사 중 주관국장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조항삭제(안 제6조제2항)
- 투자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또는 부적정 기준 항목을 제2항으로 함(안 제6조제3항)
-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안 제10조제1항)
-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사후효과 분석자료를 심사의뢰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0조제2항)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중 "국가재원을"을 "국·도비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구성하며"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로 하고 제6항 중 "위원회"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시장은"을 "투자심사 주관국장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생략)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현행과 같음) ②..... .....

<p>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4.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p>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p> <p>③~⑤(생략)</p> <p>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투자심사결과통보 등) ①(생략)</p> <p>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10조(사후 효과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p> <p>4. ....<u>군·도비를</u>.....</p> <p>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u>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u></p> <p>③~⑤(현행과 같음)</p> <p>⑥.....<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u>.....</p> <p>.....</p> <p>제6조(투자심사결과통보 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p>②.....</p> <p>.....</p> <p>.....</p> <p>제10조(사후 효과분석) ①.....</p> <p>.....</p> <p>.....</p> <p>.....<u>강구하여야 한다.</u></p> <p>②<u>투자심사 주관국장은</u>.....</p> <p>.....</p> <p>.....</p>
--	---

[수정안 포함]

###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2. 타 시·군 및 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
-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 4.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3.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
- 4. 재정·경제력 효율성 등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사업주관 국장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국장

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 심사는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 검 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 적 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3.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시 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도 의회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
  - 다. 중앙 의회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양여금의 지원신청
5. 국·도비의 보조신청
6.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

제10조(사후효과분석)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